

솔로몬 제도(Solomon Islands)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및 현행법 : 1973년(적립금고, 1976년 시행)

2 제도형태

- 적립금고제도
 - ※ YouSave제도는 적립금고계좌가 없는 자영자들이 퇴직에 대비하여 자발적으로 저축할 수 있게끔 시행되고 있음

3 적용대상

- 적립금고제도
 - 당연적용
 - 14세 이상인 근로자(가정주부, 협동조합원, 월 소득이 최소 SI\$20이상이고 월 6일 이상 근무하는 임시근로자 포함)
 - 특정 공공분야 근로자는 특별제도에 적용됨
 - 임의가입
 - 16세~35세의 실업자 및 자영자, 연령 관계없이 이전 납부기간이 연속 12개월 이상인 전직 근로자
 - 제외 : 감옥 수감자 및 의료시설에 있는 자
 - 동등한 사적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음

4 재원조달

- 가입자
 - 월 총임금의 5%에 1년에 최소 SI\$5이상을 추가
 - 추가적인 임의납부 가능
- 자영자 : 임의납부 가능
- 사용자 : 월 임금지급총액의 7.5%
- 정부 : 없음; 사용자로서 납부함

5**급여종류별 수급요건**

- 노령연금
 - 50세 이상
 - 가입자가 보험적용 고용을 지속할 경우, 납부 또한 지속해야 함
 - 조기인출 : 영구 퇴직의 경우 40세; 영구 이주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
 - 인출액지급 : 부당해고 또는 인력감축으로 인한 실업 시 가입자는 실업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적립금고 계좌에서 기금을 인출할 수 있음
- 장애연금
 - 영구적인 신체 또는 정신장애에 의한 근로능력상실로 판정되어야 함
- 유족연금
 - 유족급여 : 가입자가 본인의 저축액을 전액 인출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친인척 또는 지정된 유족에게 지급
 - 사망급여 : 가입자 사망 시 지급됨

6**급여종류별 지급액**

- 노령연금
 - 근로자 및 사용자의 총 납부금액과 경과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인출금액을 뺀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 - 가입자가 50세에 계좌에서 기여금을 인출하고 계속 근로 및 납부한 경우 5년간 추가 인출이 불가하나, 55세 이후에는 언제든지 인출 가능
 - 조기인출 : 근로자 및 사용자의 총 납부금액과 경과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인출금액을 뺀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 - 가입자가 40세에 계좌에서 기여금을 인출하고 계속 근로 및 납부한 경우 5년간 추가 인출이 불가함
 - 인출액지급 : 실업 참조
 - 이자율 조정 : 국가적립금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말까지 이자율을 산정하며 연간 이자율은 최소 2.5% 이상이어야 함
- 장애연금
 - 근로자 및 사용자의 총 납부금액과 경과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인출금액을 뺀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 - 이자율 조정 : 국가적립금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말까지 이자율을 조정하며 연간 이자율은 최소 2.5% 이상이어야 함
- 유족연금
 - 유족연금 : 근로자 및 사용자의 총 납부금액과 경과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인출금액을

뺀 금액을 지급

- 이자율 조정 : 국가적립금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말까지 이자율을 조정하며 연간 이자율은 최소 2.5% 이상이어야 함
- 사망급여 : SI\$1,000에서 SI\$3,000의 일시금 지급

7 관리운영기관

- 국가적립금고이사회
 - 제도 총괄 및 보험료 징수
 - 재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독립된 삼자 기관으로 정부, 사용자, 근로자 각각 2명 및 장관의 재량권에 의해 선발된 2명의 대표자로 구성됨
 - <http://www.sinpf.org.sb>

<2018년 ISSA 자료>